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2026.7.1.) 및 「지방자치법」 개정·시행(2026.7.1.)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등의 수당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통합특별시의 장 및 교육감과 동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지사 및 부시장 직급보조비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부지사 및 부시장의 직급보조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 · 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u> (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생략)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	② -----
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
형평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특수지	-----
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	-----

기준표의 적용요령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u>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